

춘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 공고

춘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역 내 육아 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어린이집과 가정양육을 지원하고 다양한 육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육과 양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채용할 계획이오니 관심 있는 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6월 26일

춘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 분야 및 자격요건

○ 지원 분야 및 자격

채용분야	인원	계약기간	주요업무	자격 요건
대체교사 (계약직)	0명	2026. 8. 1. ~2026 12. 31.	보육교사의 담임업무, 보육교사의 업무보조 (유휴지원)	-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을 취득 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교사 자격 소지자 우대 - 만 2년 이상 보육 공백이 있는 자는 어린이집 장기미종사자 교육 이수 필수 - 만 60세 미만

2. 전형 방법 및 일정

○ 전형 방법 및 일정

전형구분	전형일정	비 고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2026. 6. 26.(금) ~ 2026. 7. 13.(월) 17시	이메일(cchildcare2@naver.com)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6. 7. 14.(화)	개별통보
면접전형	2026. 7. 15.(수)	개별통보
최종합격자 발표	2026. 7. 16.(목)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오리엔테이션	2026. 7. 23.(목)	오리엔테이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임용예정일	2026. 8. 1.(토)	

※ 전형 일정은 춘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 서류접수 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6. 6. 26.(금) ~ 2026. 7. 13.(월) 17:00까지
- 접수방법 : E-mail, 방문 접수 (우편, 대리접수 불가)
- 접수처 : cchildcare1@naver.com
 - ★ 메일제목에 [대체교사-○○○응시] 라고 명기할 것
 - ★ 접수는 마감일시 도착분까지 유효함 (기한 엄수)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 고
1차 (서류전형)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자격증 사본 - 경력증명서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재직기간 및 담당 업무내용, 업무경력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자격요건 및 경력 기간은 공고일 기준 (2026. 6. 26.) - <u>서명란에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u>
2차 (면접합격)	-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 성범죄경력·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조회서 - 잠복결핵확인서 - 보건증 -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 반명함판 사진 1장	- 7.23.(목) 오리엔테이션 진행 전 서류 제출 - 제출한 1차, 2차 서류 모두 이상 없을 시 최종합격자로 임용

4.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구분	대체교사
보수기준	보건복지부 대체교사 인건비 기준 기본급 *교통비: 100,000원 *지자체 수당 별도 4대 보험 가입, 퇴직연금 적용
근무조건	주 5일 (월~금 근무) (09:00~18:00 일 8시간 /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주요업무	어린이집 담임 업무 / 업무 보조(유휴 지원시)
근무개시일	2026. 8. 3.(월) ※ 주 5일 근무 조건에 따라 실제 첫 출근은 8월 3일에 진행됩니다. ※ 수습 기간은 3개월이며 수습기간 동안 업무수행 등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5. 유의사항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 재교부 기한 2년(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 지원자는 근무개시일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은 제공된 첨부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함.**
-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됨.
- 자격증 사본 제출 시, 증빙서류 확인이 불가능한 자격, 면허,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임용 후 서류,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와 결격사유 확인이 되면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채용 여부 확정일 이후 14일까지 채용 서류(전자서류 제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본 채용 공고는 센터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응시 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관련문의: 담당자 033-242-0756 (대체교사관리자)